

경제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125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5년 8월 29일
4. 회부일자 : 2025년 8월 29일

II.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안이유

-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 추경과 시정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2.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2조 192억 5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0조 9,393억 6천만원과
대비하여 2.1%(1조 798억 9천 9백만원) 증가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조 6,838억 1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9,526억 9천 7백만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4조 3,354억 4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1,272억 2백만원) 증가함.

< 서울특별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52,019,259	50,939,360	1,079,899	2.1
일 반 회 계	37,683,811	36,731,113	952,697	2.6
특 별 회 계	14,335,448	14,208,246	127,202	0.9

3.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가. 세입

- 경제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3,907억 8천 8백만원에서 7천 2백만원(0.02%) 감소한 3,907억 1천 6백만원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천 2백만원(0.02%)이 감액된 3,907억 1천 6백만원이 편성됨.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37억 2천 2백만원임.

< 2025년도 경제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390,716	390,788	△72	△0.02
일 반 회 계	386,994	387,066	△72	△0.02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3,722	3,722	-	-

나. 세출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85억 5천 8백만원에서 3억 2백만원(0.04%)이 감소한 7,082억 5천 6백만원임.

< 경제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708,256	708,558	△302	△0.04
행정운영경비	1,569	1,569	-	-
재 무 활 동	43,637	43,637	-	-
사 업 비	663,050	663,352	△302	△0.05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백만원(0.04%)이 감소한 6,875억 3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함.

< 경제실 소관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708,256	708,558	△302	△0.04
일 반 회 계	687,536	687,838	△302	△0.04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20,720	20,720	-	-

○ 감액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사업에서 1억 5천만원이 감액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1억 5천 2백만원이 감액됨.

III.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

- 2025년 하반기 세계 경제는 통상 마찰 격화와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성장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주요국들의 낮은 성장률,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 및 금융 불안정성 등이 세계 경제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또한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건설투자 부문의 부진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른 수출부진,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하여 대부분의 기관이 0%대 성장을 전망하였음.

〈 주요 기관의 국내 성장률 전망 현황 〉

(단위 : %, %p.)

구 분	기존 전망치	시점	수정 전망치	시점	변동폭
정부	1.8	'25.1	0.9	'25.8	△0.9
한국은행	0.8	'25.5	0.9	'25.8	0.1
KDI	0.8	'25.5	0.8	'25.8	-
IMF	1.0	'25.4	0.8	'25.7	△0.2
OECD	1.5	'25.3	1.0	'25.6	△0.5

※ 각 기관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6월 4일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경기 진작(17조 3천억원), 민생 안정(5조 3천억원), 세입경정(10조 3천억원) 등을 내용으로 3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¹⁾(6.23.)하여 기정예산(687조 1천억원) 대비 16조 2천억원이 증액된 703조 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중 민생 안정 분야에 약 12조 2천억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반영되었음.
-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총규모는 약 13조 9천억원으로, 정부는 이 중 약 1조 7천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서울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10%와 달리 25%(시: 15%, 구: 10%)를 부담하게 되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6월 결산 이후 순세계잉여금 등의 여유재원을 조정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이미 끝낸 이후였기 때문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매칭예산을 편성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정부는 1차 지급분은 전액 국비로 지급하되 2차 지급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유재원을 활용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매칭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음.
-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채의 발행 사유²⁾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지방재정법」의

1) 국무회의 의결 : 6.19., 국회 제출 : 6.23. 국회 본회의 의결 : 7.4.

2)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을 요청하였고, 국회에서는 서울시의 요청을 반영한 2건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

- 그러나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는 국회 일정상 9월 말로 예정되어 있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 지급일(9월 22일) 기한을 맞출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채 3,500억원을 발행하되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예탁된 3,500억원을 다시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³⁾에 활용할 계획임.
-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감액하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의 취약계층 돌봄 강화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248억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승객 감소, 운영 적자 누적 등으로 인해 올해 말 기준 으로 약 1조원의 누적 부채가 예상되는 시내버스조합에 1,375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2025년도 서울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점투자 분야 >

분 야	주요 내용	추경안
정부추경 등 대응(9,236억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8,988억원 (국비: 5,488억원)
	기타 국고보조사업	248억원
대중교통 재정지원(1,375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375억원

2.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가. 세입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비용의 총당

3) 해당 사업은 행정국 세출사업으로 편성됨(사업별설명서 205p.).

- 경제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천 2백만원(0.02%)이 감소한 3,907억 1천 6백만원이 편성됨.

<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사 유
합 계	390,716	390,788	△72	
일반회계	386,994	387,066	△7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326	1,398	△72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비 변경내시 반영(일자리정책과)
도시개발특별회계	3,722	3,722	-	

- 이 중 일반회계는 3,869억 9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천 2백만원이 감액(0.02%)됨.
- 주요 감액 내역은 국비 매칭 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일자리 정책과)이 2025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중도탈락자 등 결원에 대한 신규 선정을 중단하면서 행정안전부는 변경된 각종 부대비용과 사업 추진 현황을 반영하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7천 2백만원을 감액하여 변경 내시함.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7억 2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함.

나. 세 출

- 경제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7,082억 5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백만원(0.04%)이 감액되었으며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경제실 세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정 예산과 동일한 1.4%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75억 3천 6백만원으로 2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3억 2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중소기업 단체 협력강화 사업은 중소기업에 각종 컨설팅과 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중소기업 관련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할 단체 2개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지원 기관의 미달로 1개 단체만 선정하게 되면서 관련 예산 1억 5천만원이 감액됨.
 - 다음으로 국비 매칭 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 자리를 발굴·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 말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중 발생한 결원에 대한 신규 인원을 선발하지 않으면서 변경된 각종 부대비용과 사업추진 현황을 반영하여 국비 7천 2백만원과 시비 8천만원 등 총 1억 5천 2백만원이 감액됨.
- 당초: 지원 인원 55명 등 총 3억 2천만원(국비 1억 5천만원, 시비 1억 7천만원)
 변경: 지원 인원 43명 등 총 1억 6천 8백만원(국비 7천 8백만원, 시비 9천만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 사업기간: 2025. 1. ~ 12. ※ 세부 사업별 사업기간 상이
- 사업대상: 39세 이하 서울시 거주 청년
- 수행주체: 자치구(9개)
 ※ 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 사업규모: 1개 유형, 13개 사업, 43명 지원

사업유형	사업수 (개)	지원 인원 (명)	지원 기간	매칭비율	
				인건비	기타지원비
계	13	43		(국비 : 시비 : 구비)	
지역혁신형 (1유형)	13	43 (인센티브 28명)	2+1년	30:30:30(민간 10)	30:35:35

※ 기타지원비: 참여자 기본·심화 교육비, 취·창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관련 비용 등

- 사업유형별 지원내용
 (1~2년 차)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연 2,400만원), 역량강화, 기타지원비(연 300만원), 지역자율지원 등
 (3년 차) 정규직 유지(전환) 또는 지역내 정규직 취·창업(3개월 이내) 정착시, 청년에게 인센티브(최대 1,000만원) 지원

- 이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액된 사업은 공모 미달이나 국비 매칭 사업의 국비 감액에 따른 것으로 감액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경제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편성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내역
경 제 실 합계		(X58,157) 687,536	(X58,229) 687,838	(X△72) △302	
추가경정예산사업 계		(x78) 3,234	(x150) 3,536	(x△72) △302	
경제정책과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3,066	3,216	△150	▪ 중소기업 관련 단체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감액
일자리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x78) 168	(x150) 320	(x△72) △152	▪ 행정안전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및 매칭시비 조정

입법조사관	연락처
이성찬	2180-8061